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 삼성SDI 사건을 중심으로 -

김유진 *

정차호**

【목 차】

I. 서론

II. 삼성SDI 판결

1. 사건 이력
2. 법원의 판단 및 그 법리
3. 법원 판결의 문제점

III. 기판력 법리 개요

1. 기판력의 법리
2. 기판력의 범위
3. 일부청구와 기판력의 범위
4. 그 외 기판력 범위의 판단기준

IV. 기판력의 확장론

1. 기판력 확장론에 대한 한국의 태도
2. 해외 기판력 법리의 연구

V.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 적합한 기판력 법리의 제안

1. 해석론적 해결방안
2. 입법론적 해결방안

VI. 결론

【국 문 요 약】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따라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주문’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민사소송의 하나의 종류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도 그 기판력 법리가 적용될 것이다. 삼성SDI 사건의 1차소송(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746 사건)에서 원고는 예상하는 보상금 중 일부를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매출액, 실시료율, 발명 및 고안의 기여율, 원고의 기여율 등의 구체적인 수치를 결정한 후 전체 보상금액수를 결정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주저자).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교신저자).

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가 나머지 액수에 대하여 소위 잔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2차소송에서 1심법원은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8143 사건), 항소심법원은 잔부청구를 인정하고 보상금 산정을 위해 그 사건을 환송하였다(특허법원 2017나1438 판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이 규정하는 기판력 법리에 따른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3차소송에서 법원은 기존의 확정판결이 판단한 바 있는 매출액, 실시료율, 발명 및 고안의 기여율, 원고의 기여율 등을 완전히 새로 심리하여 새로운 수치를 결정하였다(특허법원 2020나1155 판결). 이 글은 삼성SDI 사건에서 1차소송의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수치들이 3차소송에서 다시 심리, 판단되는 문제점을 특정한다. 그러한 중복심리가 당사자 및 법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하고 법원판결의 일관성을 해치게 된다. 현행 기판력 법리가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서는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글은 한국, 일본 미국 및 독일의 소송물이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서는 기판력의 범위를 ‘주문(객관적 범위=소송물)’으로 좁게 볼 것이 아니라 ‘심리, 판단된 주요 쟁점’에까지 넓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즉, 첫째, 해석론적으로는 기판력의 범위를 한국 소송물이론 중 소송물을 ‘신청과 사실관계’로 보는 ‘이분지설’이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 가장 적합하므로 향후 법원이 그 이분지설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입법론적으로는 미국의 쟁점배제효 법리를 발명진흥법에 도입시킬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 주장을 관철하는 방안으로 발명진흥법에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해당 소송물 및 그 소송물의 판단을 위해 실질적으로 심리, 판단된 주요 쟁점에 미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I. 서론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 있어서 원고(발명자)가 기대하는 보상금 중 일부를 청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위 ‘일부청구’의 경우이다. 그러한

일부청구의 이유는 전부 승소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 및 /또는 시간이 더 경과하면 관련 이익이 더 창출되는 점일 것이다.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는 발견되지 않으나, 특허출원에서 법인출원의 비율이 높다는 점과¹⁾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의 증가에 관한 관측이 존재한다는 점을²⁾ 감안하면, 일부청구의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서 원고가 기대, 주장하는 액수와 법원이 실제로 산정하는 액수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경험칙이라는 점에 근거하면 일부청구가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민사소송법에서의 ‘처분권주의’는 원고가 소송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므로,³⁾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서도 원고가 일부청구를 선택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하지만 일부청구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고 종업원이 잔부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잔부청구 자체가 타당한 것인가부터 시작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가 등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즉,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를 주문에만 한정할 경우 확정판결에서 이미 심리, 판단한 내용을 잔부청구 소송에서 중복으로 심리, 판단하게 되는 불합리를 초래한다. 특히,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서의 판결 주문에는 보상금 산정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잔부청구소송에서 법원은 확정판결에서 심리, 판단된 내용과 다르게 판단하여도 기판력 법리를 위반한 것이 아니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에서는 먼저 삼성SDI 사건에서 일부청구가 일부 기각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잔부청구의 제소가 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판력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

1) 특허청, “2021년 지식재산 백서 제7편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및 심사·심판 통계 현황, 제1장 국내출원 분야 현황”, 특허청, 2022, 418면.

2) 차효진, “2022. 03. 04. 기술혁신에 도입했는데 ... 늘어나는 직무발명보상제 소송”, 매거진 한경, 뉴스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202234587b>>.

3) 정세진, “일부청구에 관한 고찰”, 영산법률논총 제7권 제2호,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10, 79면(“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소송의 개시·범위·종결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처분권주의가 지배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만을 먼저 청구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준인 일부청구에 관한 학설, 신의칙, 소송물이론을 살펴본다. 그리고 삼성SDI 사건의 판결들에서 나타나는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공식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관력의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본, 독일, 미국의 기관력 법리를 비교, 탐구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론을 찾고자 한다.

II. 삼성SDI 사건

1. 사건 이력

피고(삼성SDI)는 전자, 전기기계기구와 그 부품 및 소재의 개발,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업원으로서 1995. 7. 1.부터 2005. 3. 31.까지 에너지 연구소의 플라스틱 리튬이온전지(PLI) 연구팀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재직 중 1998년경에 리튬2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전지(이하, ‘폴리머전지’라 한다), 2차전지를 발명, 고안하였고 해당 발명, 고안들은 각각 ‘특허발명 1’과 ‘특허발명 2’, 그리고 ‘등록고안’으로 등록되었다. 그 후 피고는 2000. 9.경부터 대상 특허발명 및 등록고안을 실시한 폴리머전지에 대하여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인 2018. 7. 29.까지 생산·판매하였으며 2004. 8. 25.에는 대상 권리를 근거로 일본 소니(SONY)와 교차실시허락(cross-license) 계약도 맺었다.

가. 1차소송(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746 사건)

1차소송은 원고(공동발명자 중 1명)가 “이 사건 발명과 고안 중 최종의 존속기간 만료일인 2018. 7. 29.까지 피고가 얻을 이익 가운데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금의 액수는 금 7억원 이상이 되나, 일부청구로서 금 1억10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원고의 그 주장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은 특허권 존속기간의 만료일인 2018. 7. 29.까지의 피고의 추정이익액을 토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금으로 83,956,984원을 산정하였다. 그 산정에 있어서 수원지방법

원은 특허발명 1의 미국매출은 산정에 포함시켰고, 일본 소니와의 교차 실시허락(cross-license)계약에 의한 매출과 특허발명 2와 등록고안의 특허비등록국가에 관한 매출액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판결에 대해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고, 대상 판결은 확정되어 기판력을 가지게 되었다.

나. 2차소송(1심: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8143 사건; 항소심: 특허법원 2017나1438 사건)

원고는 2차소송을 제기하면서 1차소송에서 청구한 1억100원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다시 일부인 3억원을 청구하였다. 2차소송은 1차소송의 잔부청구이면서 동시에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아닌 일부청구에 해당하였다. 즉, 원고는 확정판결에 대한 잔액청구소송에서 1차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액수에만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잔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2차소송의 1심법원은 “1차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일부청구하는 금액의 범위를 나머지 부분의 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일부에 관하여 선고된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그 청구와 구별되는 나머지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이 사건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그 설시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주문에만 미친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추측컨대, 법원은 그러한 설시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숨겨진 이유야 어떠하든, 동 법원은 동 소 제기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동 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는 점도 신의칙 법리의 지나친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항소심법원은 위 판결 중 신의칙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판결을 취소하고 그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그 판결에 대한 상고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였고(대법원 2017. 11. 9.자 2017다247367 결정), 이에 따라 나머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산정하는 3차소송이 진행되었다.

다. 3차소송(1심: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27009 사건; 항소심: 특허법원 2020나1155 사건)

3차소송의 1심판결은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 있어 발명의 기여도, 실시료율, 기여율 등 수치에 관하여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고 독자 심리 후) 1차소송과 같은 수치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피고의 매출액의 계산에 있어 법원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셀, TCO셀, 팩의 전체 매출액을 다시 셀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추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고, 특허비등록국가에서의 매출액과 교차실시허락(cross-license)계약으로 인한 수익에 대하여서도 직무발명보상금의 산정에 포함시켜 다시 산정하였다. 그리고 항소심법원은 3차소송의 1심판결과 달리 특허발명과 등록고안에 따라 각각 가상 실시료율과 원고의 공동발명자 기여율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다시 산정하였다. 간단히 말하면, 항소심법원은 1차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무시하고 새롭게 산정한 것이다.

2. 법원의 판단 및 그 법리

가. 일부청구

먼저 일부청구의 판단에 있어 법원은 민법의 처분권주의 및 손해배상에 관한 가분채권의 법리를⁴⁾ 참고한 후, 원고의 잔부청구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1차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의 범위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 점에 대하여 1, 2, 3차 소송에서 전부 이의가 없었다. 즉, 법원은 “1차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일부 청구하는 금액의 범위를 나머지 부분의 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

4)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일부에 관하여 선고된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그 청구와 구별되는 나머지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이 사건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실시하였다.⁵⁾

나. 신의칙

2차소송의 제기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2차소송 1심법원은⁶⁾ ① 원고의 청구는 채권의 “특정한 일부”를 청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② “결국 일부청구라 하더라도 법원이 일부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금전채권의 전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게 되고”, ③ 1차소송에서도 “이 사건 발명 및 고안으로 인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 전부에 관한 심리·판단을 받은 것”이며, ④ 이에 따른 법원의 일부기각 판결은 “후에 청구할 수 있는 잔부는 없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라는 점, ⑤ 그리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의 잔부청구는 “실질적으로 전소에 인정되지 않았던 청구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고 …… 피고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이중응소의 부담을 강요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본 사건의 소를 각하하였다. 하지만 그 항소심에서 특허법원은⁷⁾ ①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이고 잔부청구에 미치지 않는 것인데, “잔부청구에 관한 후소의 제기를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판결의 이유 부분에도 기판력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기판력의 법리에 반하고”, “채무자에게 응소의 고통을 줄 목적으로 일부청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잔부청구에 관한 후소의 제기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 ② “잔부청구에 관한 후소의 제기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신뢰이익을 해친다는 점에서 허용될 수 없다”는 점, ③ 채권자가 명시적 일부청구를 한 경우 채무자에게 잔부청구에 대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존재하게 되지 않는다는 점, ④ 2차소송 1심에서 채권 전부가 일부

5) 수원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5가합68143 판결.

6) 수원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5가합68143 판결.

7) 특허법원 2017. 5. 26. 선고 2017나1438 판결.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밖에 존재하지 않아 후에 청구할 수 있는 나머지 부분이 없다는 것은 “일부청구가 일부 인용되거나 전부 기각된 경우에는 잔부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인데, 이는 인용 여부와 범위에 따라 잔부청구의 허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점, ⑤ 시간이 지나야 경영효과가 나오는 이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감안해 보았을 때 원고의 잔부청구는 피고에게 응소의 고통을 주는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1심법원의 신의칙에 근거한 판결이 부적법하다고 판결하고 그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하여 3차소송에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산정이 다시 이루어졌다.

다.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산정

(1) 1차소송(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746 사건)

83,9569,84원 = 피고의 이익 2,810,510,164원(1998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매출액의 합계금 520,464,845,252원 × 실시료율 0.009 × 기여율 0.6) × 발명자 보상률 0.1 × 원고의 기여율 0.3 -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 358,320원.

(2) 3차소송 1심(수원지방법원 2017가합27009 사건)

(가) 2000~2008년까지의 직무발명보상금

3,695,706원 = 매출액 228,130,000,000원 × 직무발명의 기여도 60% × 실시료율 0.9% × 독점권 기여율 10% × 발명자 공헌도 10% × 원고 기여율 30%

(나) 2009~2018년까지의 직무발명보상금

48,104,863원 = 매출액 2,969,436,000,000원 × 직무발명의 기여도 60% × 실시료율 0.9% × 독점권 기여율 10% × 발명자 공헌도 10% × 원고 기여율 30%

(다) 교차실시허락(cross-license)으로 인한 직무발명보상금

7,505,550원 = 피고의 이익 250,185,000원 × 발명자 공헌도 10% × 원고 기여율 30%

(라) 합계 = (나) + (다) = 55,610,413원

(3) 3차소송 항소심(특허법원 2020나1155 사건)⁸⁾

(가) 제1발명

55,645,350원 = 피고 회사의 이익 556,453,500원(피고 회사의 2000년~2018년 리튬이온폴리머전지 전체 매출액 합계의 현재액 2,225,814,000,000원 × 이 사건 제1발명의 기여도 100% × 이 사건 제1발명의 가상실시료율 0.25% × 이 사건 제1발명의 독점권 기여율 10%) × 이 사건 제1발명의 중업원 공헌도 10% × 원고의 공동발명자 중 기여율 100%

(나) 제2발명

8,346,802원 = 피고 회사의 이익 556,453,500원(피고 회사의 2000년~2018년 리튬이온폴리머전지 전체 매출액 합계의 현재액 2,225,814,000,000원 × 이 사건 제2발명의 기여도 100% × 이 사건 제2발명의 가상실시료율 0.25% × 이 사건 제2발명의 독점권 기여율 10%) × 이 사건 제2발명의 중업원 공헌도 10% × 원고의 공동발명자 중 기여율 15%

(다) 제3발명

6,328,884원 = 피고 회사의 이익 210,962,800원(피고 회사의 2000~2013년 리튬이온폴리머전지 전체 매출액 합계의 현재액 1,054,814,000,000원 × 이 사건 제3발명의 기여도 100% × 이 사건 제3발명의 가상실시료율 0.20% × 이 사건 제3발명의 독점권 기여율 10%) × 이 사건 제3발명의 중업원 공헌도 10% × 원고의 공동발명자 중 기여율 30%

(라) 직무발명보상금 합계

70,321,036원 = 55,645,350원 + 8,346,8025원 + 6,328,884원

3. 법원 판결의 문제점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서 일부청구와 잔부청구가 혼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기관력의 범위에 대해 “발명진흥법”에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

8) 3차소송 항소심에서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서 제1발명과 제2발명의 피고 회사의 이익 산정대상은 2000년부터 2018년 리튬이온폴리머전지 전체 매출액이고, 제3발명의 피고 회사의 이익 산정대상은 2000년부터 2013년 리튬이온폴리머전지 전체 매출액의 합계이다.

지 않고 학설도 제기된 바가 없다. 하지만 본 저자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일부청구는 (처분권주의에 따라)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며, 그 생각을 전제로 일부청구와 잔부청구에서의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문제점들을 제시해보려고 한다.

첫째, 1차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소한 일부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발명 및 고안으로 인한 직무발명보상금 전체를 심리·판단하였다. 따라서 기판력 법리에 따라 전체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받은 원고의 일부청구가 일부 기각된 확정판결의 경우에도 잔부청구의 제소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기판력의 법리에 의하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한하여 적용된다. 하지만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를 (좁은 내용만을 특정하는) 주문에만 한정할 경우 이하와 같이 잔부청구 소송에서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해질 가능성이 있다. 먼저, 1차소송에서의 수원지방법원과 3차소송에서의 항소심법원은 일부청구와 잔부청구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있어서 모두 동일하게 특허권 존속기간 전부에 대한 피고의 추정이익액을 토대로 피고이익을 산정하였다. 즉, 제1차 일부청구 소송과 후속의 잔부청구 소송에서의 주문은 서로 다르나 소송에서 판단된 내용은 동일하였다. 그리고 3차소송에서의 항소심법원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실시료율, 발명 및 고안의 기여율, 발명자보상율, 원고의 기여율에 대하여서는 1차소송에서와 다른 새로운 수치를 산정하였다. 즉, 확정판결에서 이미 확정된 내용을 새롭게 심리, 산정한 것이다. 더불어 3차소송의 1심 및 항소심에서 양 법원은 1차소송에서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았던 특허비등록국가에서의 해외 매출액도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3차소송에서 법원은 1차소송에서 심리, 판단된 내용까지도 다시 심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결론을 취하게 되면서 실질상 1차소송 확정판결의 내용을 뒤집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합당하지 않은 결과의 초래는 현행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기판력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차소송 1심법원은 그러한 이중응소, 중

복심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⁹⁾ 그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신의칙 법리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2차소송 항소심법원은 그러한 신의칙 법리가 현행 민사소송법 규정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2차소송 항소심법원은 한편으로는 현행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였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중응소, 중복심리의 불합리를 외면하였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기판력의 범위를 ‘주문’에 한정하는 것이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일부청구가 흔히 청구되는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서 그러한 좁은 기판력 법리는 자주 문제가 되고, 이중응소, 중복심리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표는 1차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심리, 판단된 내용이 3차소송 1심 및 항소심에서 달리 심리, 판단되었음을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다.

<1차소송 및 3차소송에서 심리, 판단된 내용의 비교>

내용 구분	1차소송 1심	3차소송 1심	3차소송 항소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금83,956,984원 및 ...”	“피고는 원고에게 55,610,413원 및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청구 내용 (소송물)	2000. 9.경부터 2018년말경까지 직무발명보상금 (실제로는 2008년말경까지) 7억원 중 일부인 1억100만원)	이 사건 선행판결인 2008년까지의 직무발명보상금(자기실시분 한정) 중 1억100원을 제외한, 2018. 7. 29.까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발명으로 인한 이익 중 직무발명보상금 중 일부인 3억원	
실시료율	0.9%	0.9%	제1, 2발명: 0.25% 제3발명: 0.2%
발명 및 고안의 기여율	60%	60%	100%
발명자 보상률	10%	10%	10%

9) 잔부청구는 “실질적으로 전소에 인정되지 않았던 청구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고 …… 피고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이중응소의 부담을 강요하게 되는 것 …”.

원고의 기여율	30%	30%	제1발명: 100% 제2발명: 15% 제3발명: 30%
특허 등록국가 매출	특허발명1의 매출만 포함하여 직무발명보 상금을 산정. 1998부터 2018년까지 연 평균 매출액 합계 금 520,464,845,252원.	2000-2008년 매출액: 228,130,000,000원; 2009-2018년 매출액: 2,969,436,000,000원.	제1발명과 제2발명: 2000-2018년 매출액: 2,225,814,000,000원; 제3발명: 2000-2013년 매출액: 1,054,814,000,000원.
특허 비등록국가 매출	포함×	포함○	포함○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어떤 내용이 잔부청구 소송에 기판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일부청구에 관한 학설과 기판력이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해석론으로 중복제소, 중복심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의 수단으로 입법론적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기판력 법리 개요

1. 기판력의 법리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제한된다.¹⁰⁾ 즉, 판결이 확정된 이후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후소법원은 전소법원의 판결과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여 이를 판결의 실질적 확정력이라고도 한다.¹¹⁾

10)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11) 한충수, “사법: 소송물의 실질적 동일성과 기판력의 작용이론 - 판례분석과 시론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25권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3면(“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당사자는 더 이상 다툼의 대상이 된 분쟁에 대해 불복할 수 없게 되며 관련 법원은 기속력을 받게 된다. 이는 당해 사건을 다룬 법원과 당사자에게 국한되는 것이지만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은 종업원 발명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 승계한 후 그 직무발명으로 인한 회사의 이익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이다.¹²⁾ 그러므로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은 기판력 법리에 따라 그 승패와 관계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장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다툴 수 없고, 후소법원은 그 확정판결과 다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구속력을 받게 된다.¹³⁾ 따라서, 그 기판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서도 존재한다.

2. 기판력의 범위

기판력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한국의 학설과¹⁴⁾ 재판실무에서는¹⁵⁾ “주문”을 “주문 = 소송물 = 객관적 범위(물적 범위)”로 본다.¹⁶⁾ 즉, 주

법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확정된 前訴法院의 중국판결이 당사자나 변론종결후 승계인은 물론 後訴法院에 대해서도 일정한 내용적인 구속력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금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법원은 전소법원의 판결과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이를 판결의 기판력 혹은 실질적 확정력이라고 부른다.”).

- 12)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 13) 홍기문, “기판력의 범위”, 법학논총 제35권 제3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7면.
- 14) 김건호, “기판력의 물적범위에 관한 소고: 소송물이론을 중심으로”, 법조 제56권 제9호, 법조협회, 2007, 137면(“여기서 기판력의 물적 범위 = 주문 = 소송물이라는 원칙 내지 전통적 명제가 성립되게 된다.”); 김상용, “기판력의 작용과 범위의 관계”, 법학연구 제57권 제3호(통권 제89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317면은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기판력은 소송물(주문)에만 미치고 공격방어방법(판결이유)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고 하면서 주문과 소송물을 서로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 15)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가옥명도등]에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해당 판결은 최근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61381 판결[가등기말소]에서도 인용되고 있다.
- 16) 홍기문, “기판력의 범위”, 법학논총 제35권 제3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23면(“여기에서 ‘주문에 포함된 것’의 의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주문은 당사자의 관심사이므로 주문=소송물=객관적 범위로 파악하고 있다.”); 김일룡, “판결주문의 형식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의 관계”, 동아법학 제53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342면(“통설은 ‘소송물=

문 자체에 대한 이해판단보다 소송물에 대한 존부를 기초로 기판력의 범위를 해석하는 것이다.¹⁷⁾¹⁸⁾ 그러므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주문 기판력)는 소송물의 존부가 그 판단에 미치는 것으로, 판결이 어느 소송물에 대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결국 소송물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것으로 귀착한다고 볼 수 있다.¹⁹⁾²⁰⁾ 이러한 구별방법을 전통적인 기판력 이론에 근거한 식별방법이라고도 부른다.²¹⁾

기판력의 범위'라는 등식을 인정하며,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 범위는 어떤 소송물이론을 취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 17) 김건호, 앞의 논문, 136-137면(“그런데 판결주문은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응하는 것으로써 본안판결의 경우 원고의 소송상 청구의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기판력이 소송물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한하여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된다.”); 석현수, “기판력 작용의 요건”, 한양법학 제26권 제3집 통권 제51집, 한양법학회, 2015, 129면(“원칙적으로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서(주관적 범위)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한해(객관적 범위) 미치고, 그 표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이다(시적 범위).”); 한충수, 앞의 논문, 1면(“기판력의 범위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는 소송물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 18) 통설과 반대로 이현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의 소송물과 기판력과의 관계”, 법학논총, 제35권 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189면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문제에서 “주문의 ‘매매(또는 증여, 교환)를 원인’ 부분의 기재에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다”고 주문 및 소송물이 객관적 범위와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 19) 이시운, 신민사소송법 제12판, 박영사, 2018, 649면에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판결주문과 소송물과 동일하다고 보면서 “기판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재·부존재에 대한 판단에 미치므로 전소와 같은 소송물을 후소로 제기한 경우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한다. 따라서 전후 양소가 같은 소송물인가의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범경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판결주문과 이유의 판단에 관련하여 -”,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 홍익법학연구소, 2012, 391면에서 전소 기판력의 작용범위는 동일관계·선결관계·모순관계의 모습으로 작용하는데 그 중 동일 관계에서 “이전 소송의 소송물을 후소로 다시 제기하면 기판력이 작용하여 이를 차단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 20) 이와 반대의 의견으로 홍기문, “기판력의 범위”, 법학논총 제35권 제3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27면에서 “기판력의 의의, 기판력의 범위, 기판력의 작용은 개념적·체계적으로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구별의 실익이 있다. 즉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내(소송물의 동일)에서 기판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 21) 손한기, “일부청구 허부에 관한 소고”, 김홍규박사 화갑기념논문집, 삼영사, 1992, 192-193면(“전통적인 기판력론에 의하면 기판력의 정당화 근거를 법적 안정성 내지 광의의 일사부재리에서 구한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에서는 전소에서 당사자가 충분히 공격받을 할

3. 일부청구와 기판력의 범위

일부청구(Teilklage, partial action)란 채권이나 대체물 등과 같이 수량적으로 나눌 수 있는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채권을 채권자가 그 임의의 일부를 분할하여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²²⁾ 일부청구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학설이 존재한다.

가. 일부청구 긍정설

일부청구 긍정설이란 선행판결에서의 일부청구가 명시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후소에서 전소의 청구가 일부청구였음을 주장하여도 그 소송물과 기판력은 청구된 부분에 한정되고,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잔부청구를 제소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²³⁾

나. 일부청구 부정설

일부청구 부정설이란 일부청구에 관한 명시 여부를 불문하고 잔부청구는 소송물로 인정되지 않고 먼저 청구된 소송물을 전부라고 보는 견해이다.²⁴⁾ 즉, 금전 채권액 중 청구한 일부청구와 잔부청구에 담보권의 유무, 반대급부의 유무, 이행기의 차이 등과 같이 채권의 일부를 특정할 수 있는 표식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소송물이 일부청구에 한정되어 허용되나,²⁵⁾ 단순히 임의로 기계적, 수량적으로 분할하여 청구하는 소송물

수 있도록 절차보장을 받았느냐와는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소송물에 한정하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정하게 된다. 따라서 일부청구론의 중점은 잔부가 전소의 소송물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에 놓이게 되고 나아가 전소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를 하기 위한 후소를 차단하느냐 차단하지 않느냐로 이루어지게 된다.”).

22) 원종배, “일부청구의 소송물 특정과 시효중단 문제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과 관련하여 -”, 영남법학 제53권,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167면; 정세진, “일부청구에 관한 고찰”, 영산법률논총 제7권 제2호,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10, 79면.

23) 정소민, “명시적 일부청구와 소멸시효의 중단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에 대한 평석 -”, 법학논총 제37권 제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243면; 정세진, “일부청구에 관한 고찰”, 영산법률논총 제7권 제2호,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10, 90면.

24) 태기정, “일부청구의 소송물과 시효중단범위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72521 판결”, 법학연구 통권 제55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143면.

25) 박태신, “일부청구 및 그 관련문제에 관한 고찰”, 법조 제53권 제1호, 법조, 2003, 144면.

은 언제나 전부로 취급하여 잔부청구에도 기판력이 미친다.²⁶⁾

다. 절충설(명시설)

절충설은 명시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명시설과 청구의 인용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명시설로 나누어진다. 명시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명시설은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명시적 일부청구)에 소송물은 일부청구 부분에 국한되어 그에 관한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않지만,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묵시적 일부청구)에는 소송물이 채권 전체가 되어 잔부청구의 제소는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²⁷⁾ 이는 현재 한국의 다수설이기도 하다.²⁸⁾ 그리고 청구의 인용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명시설은 전소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으면 잔부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지만 전소청구가 일부 기각될 경우 잔부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본다.²⁹⁾

라. 소결

일부청구에 관한 세 가지 학설 중 잔부청구의 제소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에 있어 명시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명시설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명시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명시설은 직무발명보상금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 그 확정판결에 대한 잔부청구의 제소가 가능하게 한다. 이는 일부청구와 잔부청구를 별개의 소송물로 보게 하여 일부청구의 소송물을 절대적으로 하나인 전체로 보아 원고 혹은 피고 한 측이 부당한 손해를 입게 되는 일부청구 긍정설과 일부청

26) 윤석준·김상수, “[民事訴訟法 case] 일부청구 후 잔부청구와 중복소제기, 기판력”, 고시연구 2006년 9월호(통권 제390호), 고시연구, 2006, 282면.

27) 원종배, 앞의 논문, 172면; 정소민, 앞의 논문, 244면.

28) 김용진, (다시본) 민사소송법, 청목, 2012, 555면(“생각건대, 일부청구임을 예상하기 어려운 법원과 피고의 이익을 고려하여 명시설이 타당하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12판, 박영사, 2018, 258면(“생각건대 일부청구의 문제는 분쟁의 1회적 해결의 요청과 분할청구의 자유존중의 필요 등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본다면 일부청구의 문제는 중복소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적 일부청구설(절충설)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29) 윤석준·김상수, 앞의 글, 283면.

구 부정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원고와 피고의 이익을 모두 고려한 학설로서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명시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명시설은 잔부청구를 별개의 소송물로 보아 일부청구 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청구의 소송에 미치지 않는 문제를 초래한다. 즉, 일부청구 소송의 기판력이 잔부청구 소송에 미치지 않으므로 잔부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일부청구 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내용과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중복심리가 강요되며, 다른 판단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기판력 법리는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서의 원고와 피고에게 이중응소, 중복심리라는 불이익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법원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는 본 논문이 집필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명시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명시설로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기판력 범위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이하에서는 2차소송 법원 판결들에서 언급한 신의칙원칙과 민사소송에서 논의하고 있는 소송물이론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한다.

4. 그 외 기판력 범위의 판단기준

가. 신의칙

신의칙 위반이란 전통적 기판력 이론과 달리 기판력의 정당화 근거를 특정한 소송물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소송절차의 쟁점에 대하여 다룰 수 있는 충분한 보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잔부청구에서 1차소송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³⁰⁾

원고의 잔부청구에 대한 2차소송의 1심과 항소심 판결을 보았을 때, 두 판결 모두 명시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명시설을 근거로 하여 일부청구의 기판력이 잔부청구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2차소송에서의 두 판결은 1차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일부청구를 산정

30) 손한기, 앞의 논문, 193면("이에 반하여 기판력의 정당화근거를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서 구하는 새로운 경향에 의하면 기판력의 정당화근거는 당사자가 소송절차에서 쟁점에 대하여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절차적인 보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소판결과 다른 주장을 하는 곳은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에 있다고 한다.").

함에 있어 금전채권의 전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다는 점이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른 판결이 내려졌다. 즉, 이 사건 2차소송의 1심에서 제기된 원고의 잔부청구가 신의칙 위반으로 판결된 주요원인은 선행소송에서 원고는 전체 직무발명보상금액에 대한 일부를 청구였지만 법원은 금전채권의 전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것에 있다.

구체적으로 1차소송에서 원고의 일부청구는 2000. 9.경부터 2008년 말까지 피고의 자기 실시분에 한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직무발명보상금인 금702,000,000원 중에서 그 일부인 1억100원에 대한 청구이었다. 하지만 판결은 이하와 같이 2000년부터 2010년 1분기까지 제조·판매한 폴리머전지의 연평균 매출액을 근거로 1998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평균 매출액의 합계를 기초로 피고의 이익을 산출하고 원고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하였다.

<p>1차소송 확정판결이 산정한 보상금 = 83,9569,84원 = 피고의 이익 2,810,510,164원(1998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매출액의 합계금520,464,845,252원 × 실시료율 0.009 × 기여율 0.6) × 발명자 보상률 0.1 × 원고의 기여율 0.3 -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 358,320원</p>
--

(1) 신의칙과 기판력의 범위

먼저,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판결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범위에 한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법원은 이 사건 원고의 일부청구인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1998년부터 2018년까지의 매출액을 참고할 수 있지만, 1차소송에서의 판결에서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판결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1차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부분에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2차소송 1심과 항소심의 두 법원은 모두 원고의 일부청구와 잔부청구의 관계에 대하여 원고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를 기판력 법리에 비추어 볼 때 2차소송 법원은 1차소송의 기판력 범위를 주문에 한하여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차소송 1심법원이 1차소송에서 금전채권의 전부에 대해 심리·판단을 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 잔부청구에 대한 부정은 기판력을 ‘판결이유’까지로 넓게 보는 것은 현행 기판력의 법리에 반한다. 또한, 2차소송의 항소심법원은 위 열거한 판결이유에서와 같이 주요하게 1차소송의 판결이 기판력 범위의 위반이라는 점으로부터 원고의 잔부청구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결론적으로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결국 2차소송의 1심법원은 기존의 좁은 기판력 법리로는 중복심리를 피할 수가 없으므로 중복심리를 피하기 위하여 신의칙의 위반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으나, 2차소송의 항소심법원은 그 신의칙의 적용이 실질적으로는 기판력 법리를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신의칙의 적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1심법원은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신의칙을 활용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그 신의칙의 적용이 기존의 기판력 법리에 반한다고 본 것이다.

(2) 소결

이상으로부터 본 저자는 원고의 잔부청구의 허용 여부에 대하여 신의칙을 이유로 판결하는 자체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진다. 즉, 원고의 잔부청구에 관한 문제는 기판력 범위에 대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지 신의칙 원칙과는 무관하다고 생각된다. 이 사건 2차소송 1심판결에서 “금전채권의 경우에 법원이 명시적 일부청구의 당부를 판결하면서 사안의 성격상 금전채권의 전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게 되는 경우에 그 채권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심리·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민사소송법의 처분권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한하여 미친다는 기판력 법리에도 반한다. 따라서 2차소송에는 처분권주의 및 기판력 법리에 대한 문제점이 존재하고,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이 원고의 일부청구와 잔부청구의 관계를 해결하는 관건이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생각된다.

나.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과 기판력 범위

판결의 ‘이유’에도 기판력을 인정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그러나, 그 방안은 현행 기판력 법리에 반한다. 즉, 법원은 주문 자체에 대한 판단보다 소송물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기판력의 범위를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한다. 주문에 대한 이해판단을 중히 여기지 않고 일부청구와 잔부청구의 소송물은 별개라는 기판력에만 착안점을 둘 경우, 3차소송 항소심에서와 같이 1차소송과는 전혀 다른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이 가능하게 된다.

(1) 3차소송 항소심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직무발명보상 운영규정’에 따라 이미 지급된 358,320원과 1차소송에서 일부청구의 직무발명보상금 83,956,984원의 합계가 본 판결에서 산정된 직무발명보상금의 합계금액인 70,321,036원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판시하였다. 즉, 3차소송에서의 항소심은 1차소송과 별개의 소송물로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지만 전체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하고 완전히 다른 결론을 취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확정된 1차소송의 판결을 뒤집은 판결이다.

다. 소송물이론과 기판력 범위

소송물(Streitgegenstand, subject of dispute)은 심판의 대상으로 되는 기본단위로서 소송의 객체를 의미하고,³¹⁾ 민사소송법에서는 사건(법 제259조), 소(법 제267조 제2항), 주문(법 제216조 제1항), 청구(법 제262조)로 규정되어 있다.³²⁾ 이러한 소송물에 대한 확정판결은 기판력을

31)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세창, 2009, 332면(“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물(Streitgegenstand)이라 함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단위로서 소송의 객체를 의미한다.”).

32) 범경철, 앞의 논문, 394면(“어떠한 소송에 있어서도 심판의 대상을 둘러싸고 양쪽 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을 충분히 다한 후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필요가 있는 바 그 대상을 강학상 표현으로 소송물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소송의 객체, 소송상의 청구, 심판의 대상으로 표현한다(민사집행법 제309조). 민사소송법에는 사건(법 제259조), 소(법 제267조 2항), 주문(법 제216조 1항), 청구(법 제262조)로 규정되어 있다.”).

발생시키고,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게 되는데, 판결 이후 동일 소송물에 대해 새로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당사자는 그 확정판결에 모순·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³³⁾

소송물을 식별하기 위한 소송물이론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실체법의 입장에서 소송물을 파악하는 구소송물이론(구실체법설), 둘째, 소송법적 입장에서 소송물을 파악하는 신소송물이론(소송법설), 셋째, 실체법과 절차법의 청구개념을 통일적으로 정의하여 그 조화를 추구하는 신실체법설이 그것들이다.

(1) 구소송물이론(구실체법설)

구소송물이론이란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소송물로 보고, 실체법상의 권리가 다르면 소송법적으로도 소송물이 별개로 되는 것이다.³⁴⁾ 민사소송법에서 소송물과 기판력의 관계에 있어 구소송물이론은 판례의 주류이다.³⁵⁾ 즉, 소송물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기준을 “신청”이나 “사실관계”로 보지 않고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로 보는 것이다.³⁶⁾

구소송물이론에 의한 1차소송에서 원고의 일부청구는 “2000-2008년 말까지 직무발명보상금 중 1억100원”이고, 이는 원고가 1차소송 확정판결에 대하여 “일부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직무발명보상금 중 일부인 잔부청구 3억”을 청구한 잔부청구와 서로 다른 법률관계로써 별개의 소송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부청구의 기판력이 잔부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33) 김인호, 민사소송법: 사례와 판례, 통계와 분석, 박영사, 2009, 1201면(“확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청구에 대한 판단내용이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여 후에 동일사항이 소송상 문제 되면 당사자는 이에 모순·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구속력을 가지며, 이를 기판력이라 한다.”); 김건호, 앞의 논문, 134면(“따라서 기판력은 당사자에 대하여는 전소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하는 행위규범(Verhaltensnorm)이 되고 법원에 대하여는 전소판결의 내용과 저촉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재판규범(Entscheidungsnorm)이 되는 것이다.”).

34) 이시윤, 앞의 책, 245면.

35) 이시윤, 앞의 책, 245면(“현재 우리나라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독일에서는 이미 자취를 감추었고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도 소수설로 되어 있다.”).

36) 김동현, “소송물의 동일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사실관계 획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5, 13면(“즉 구실체법설에서는 ‘실체법상의 권리’가 소송물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기준이 되며, ‘신청’이나 ‘사실관계’는 그 기준이 아니라고 한다.”).

는 점에서 이의가 없다. 다만 여기서 일부청구의 범위를 원고가 주장하는 2000-2008년의 기간에 대한 기한일부청구로 볼 것인지 아니면 “2000-2008년말까지 직무발명보상금 중 일부인 1억100원”인 금액일부청구로 보는지의 의문이 있다.

민사소송 판례에서는 대부분 구소송물이론을 취하고 있다. 채권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대법원 판결에서는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에 대하여 “반드시 전체 금액을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고, 일부청구하는 금액의 범위를 나머지 부분의 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금액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³⁷⁾ 그리고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1이 1차소송에서 인정된 금액(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기왕치료비로 5,668,360원)을 제외한 나머지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및 위자료 중 19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1의 1차소송에서의 청구는 명시적 일부청구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1차소송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의 이 부분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즉, 1차소송에서 원고1의 일부청구에 대한 소송물을 원고1이 주장하는 금액인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기왕치료비로 5,668,360원”으로 한 것이다.

삼성SDI 사건 3차소송의 판결도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을 따라 원고의 일부청구 범위를 “1억100원”에 중점을 둔 금액일부청구라고 볼 수 있다. 즉, 3차 소송에서 법원은 별개인 소송물인 원고의 잔부청구를 산정하기 위하여 2008-2018년까지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는 1차소송 법원에서 산정한 2000-2008년까지의 직무발명보상금산정부분에 대한 판결을 다시 산정한 것이고 합당하지 않다. 따라서 구소송물이론은 판결의 이유부분도 잔부청구의 직무발명보상금산정부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37)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36 판결,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등.

(2) 신소송물이론(소송법설)

신소송물이론은 구실체법설과 달리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소송물의 식별기준으로 보지 않고, 소송물의 이유 여부를 판단하는 전제인 법률적 관점 내지 법적근거를 소송물의 식별기준으로 삼는다.³⁸⁾ 근래에는 이러한 신소송법이론이 다수설로 자리잡고 있고³⁹⁾ 그 이론도 일부지설과 이분지설로 나누어진다. 그 중 일부지설은(一分肢說, 일원설)은 원고의 신청 그 한 가지를 분쟁의 진실한 대상으로 하여 소송물이 구성된다는 견해이다.⁴⁰⁾ 이분지설(二分肢說, 이원설)은 신청과 사실관계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하여 소송물이 구성된다는 견해이고, 이를 우리 법제에 대응시킬 경우 소송물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두 가지 요소라는 입장이다.⁴¹⁾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의 소송물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신청과 사실관계의 요소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직무발명에 관한 사건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한 사건으로서 위 판결들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확정판결 기판력의 범위를 주문에 한정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기판력의 범위가 주문에 한정하지 않고 판결이유의 내용에까지 미쳐야 한다고 볼 경우, 이러한 기판력 확장론에 적합한 소송물이론은 이분지설이라고 볼 수 있다.

(3) 신실체법설

신실체법설은 소송법이론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학설로서, 전통적인

38)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세창, 2009, 339면.

39) 이시윤, 앞의 책, 246면(“소송법적으로 소송물을 정의한다 하여 소송법설인데,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이른바 신소송물이론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실체법상의 권리는 소송물의 요소가 아니고, 소송물이 이유 있는가를 가리는 전제인 법률적 관점(rechtlicher Gesichtspunkt) 내지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고 한다. 당사자를 실체법상의 권리자·의무자 자체가 아닌 형식적 당사자로 정의하듯이, 소송물도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사실관계로 보려는 입장이다. 이제는 다수설로 되었다.”).

40) 이시윤, 앞의 책, 246면.

41) 이시윤, 앞의 책, 246면(“우리 법제에 대응시키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사실관계 두 가지가 소송물의 요소라는 입장이다.”).

실체법상 청구권의 개념을 수정하여 수정된 의미의 실체법상의 청구권의 주장을 소송물로 하는 이론이다.⁴²⁾ 하지만 신실체법설은 소송물에 대한 논리 자체가 구실체법설과 같다는 점으로부터 실체법적인 시각에 기초한 것으로⁴³⁾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 적합하지 않다.

IV. 기관력의 확장론

1. 기관력 확장론에 대한 한국의 태도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이 규정하는 기관력은 판결이유 중에 판단된 사실관계, 선결적 법률관계, 항변 그리고 법규의 해석적용 등에 대하여 기관력이 미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⁴⁴⁾ 그리고 법원도 실제로 기관력의 범위를 좁히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⁴⁵⁾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기관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① 당사자의 주요한 관심사와 소송목적은 주문에서 판단되는 결론이므로 이에 대한 기관력의 인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되고, 소송상 청구에 관하여 공격·방어를 다한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 및 예상 외의 재판방지에 적합하며, ② 청구소송에서 판결이유 중에 판단된 당사자의 주장은 소송상 소송물에 대한 ‘수단’이므로 당사자는 그 쟁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신중히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에 기관력을 생기게 하여 다른 소송물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다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고, ③ 판결이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42) 이시윤, 앞의 책, 248면.

43) 정영환, 앞의 책, 342면.

44) 이시윤, 앞의 책, 653면.

45) 이시윤, 앞의 책, 654면(“나아가 판례는 한 때 이 경우에 말소등기 청구하여 패소한 원고 甲은 乙 상대로 다시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대법(진) 2001.9.20. 99다37894에 이르러 후소인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의 이전등기청구나 전소인 말소등기청구 모두 소유자의 등기명의회복을 위한 것으로 목적이 같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법적 근거 등이 같아 결국 소송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후소는 전소의 기관력에 저촉된다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하였다.”).

실체법상의 구애를 받지 않아, 판단이 용이한 공격·방어방법부터 심리하여 소송물에 대한 판단을 신속하게 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판결이유에도 기판력이 미치게 된다면 실체법상의 논리적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신중하게 심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법원은 심리의 탄력성을 잃게 되고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된다.⁴⁶⁾

하지만 다중다기한 민사소송에서의 사건들과 달리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서 원고가 보상금 중 일부를 청구하던 전부를 청구하던 소송 목적은 원고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에 의거한 보상이다. 그러므로 판결이유에 대한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이 실체법상에서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쟁점 역시 직무발명보상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결적 사실 및 쟁점을 소송물에 관하여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기판력을 부정하는 것은 전소의 확정판결을 실질적으로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⁴⁷⁾ 그리고 판결주문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46) 김건호, 앞의 논문, 137면(“이와 같이 기판력이 판결주문에 포함된 것에 관해서만 발생하고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발생하지 않는 것은 1) 판결의 주문은 재판의 결론으로써 당사자의 소송목적이자 당사자 간의 주된 관심사인 소송상 청구를 판단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기판력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되고, 2) 당사자는 소송상 청구에 관하여 공격, 방어를 다하는 것이 기대되므로 이에 기판력을 인정하는 것은 절차권 보장 및 예상외의 재판방지에 적합하며, 3) 소송상 청구가 소송의 목적이라면 판결이유 중에 판단된 당사자의 주장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목적달성을 위하여 신중을 기하지 않고서 여러 쟁점에 대해 주장을 할 가능성이 항존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판단에 기판력을 생기게 하여 다른 소송물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다루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당사자에 대한 예상외의 타격이 될 염려가 있고, 4) 또한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도 기판력이 생기게 되면 법원은 실체법상의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공격방어방법 전부를 신중하게 순서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심리의 탄력성을 잃게 되고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시윤, 앞의 책, 653면(“이유에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 근거는 i) 당사자의 직접적인 관심사는 주문에서 판단되는 결론이고, 판결이유가 아닌데 여기에 기판력이 인정되면 당사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입히는 것이고, ii) 이유까지 기판력을 인정하면 그만큼 오판시정의 기회가 적어지며, iii) 당사자는 이유문제에 대하여는 청구의 당부판단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다투면 되고, 법원도 공격방어방법 중 이유 있는 것 하나만을 선택 판단할 수 있어서 신속한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점 등이다.”).

47) 범경철, 앞의 논문, 403면(“판결이유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법 제216조). 그런데 전소에서 당사자들이 주요쟁점으로 다툰 사항이고, 법원도 심혈을 기울여 심리한 사항이라면 주문에서 판단되지 않고 이유에서 판단된다는 이유만으로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후소에서 다시 다툰 수 있다면, 이는 전소확정판결을 실질적으로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

간결하게 결론만 표기하고 있어 주문에 의하여 생기는 기판력의 구체적 사항을 파악하고 특정하기 위하여 판결이유를 참작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다.⁴⁸⁾

2. 해외 기판력 법리 연구

가. 일본

일본에서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은 독일 민사소송법(ZPO)의 영향을 받아 제정된 것이다. 그 규정도 (한국과 같이)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하는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갖는다”고 규율한다. 그리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예외적으로 판결이유가 상계주장에 대한 재판을 제외하고 소송상 청구 또는 반소청구에 대한 재판소의 재판에만 생기고 전제문제로 되는 재판이 중간확인 소의 소송물이 되지 않는 이상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통설이다.⁴⁹⁾

즉, “소송물 = 판결사항(판결대상) = 기판력이 생기는 대상”으로 이해하여 왔지만,⁵⁰⁾ 이러한 원칙은 법원이 소송물에 대해 판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의 완전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가 계속하여 응소의 부담을 가지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기판력의 대상을 한정한 일본 민사소송법 제114조의 입법정책 하에서 일률적인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항에 따르거나 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을

48) 김건호, 앞의 논문, 138면(“기판력이 판결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한하여 발생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판결주문은 일반적으로 무색무취하고 대단히 간결하게 표현된다 ……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판결이유에는 청구취지를 비롯하여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사실관계 및 법률적 판단 등을 참조하거나 고려하여야 할 여러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판력이 발생하는 사항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그 당연한 귀결로써 당사자가 후소에서 행하는 어떠한 권리주장까지가 기판력에 의해서 배척되는가를 판단하는 것 역시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된다.”).

49) 最高裁判所第三小法廷 昭和44年6月24日判決 昭和43年(オ)第1210号.

50) 高田裕成, “争点効”, 民事訴訟法判例百選 第五版, 有斐閣, 2015, 178頁(“民事訴訟法114条1項は, 既判力は主文に包含するものに限り生じると定めているが, そこでいう「主文に包含するもの」とは, 訴訟物たる権利または法律関係についての判断であると解され, 判例は一貫して「訴訟物=判決事項(判決対象)=既判力の生じる対象」という理解を維持してきた。この理解によれば, 建物明渡請求訴訟においては, 訴訟物である所有権に基づく明渡請求権の存否の判断についてののみ既判力が生じ, 所有権自体の判断には既判力が生じることはない。”).

때 판결이유 중의 판단이라도 후소에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는 新堂幸司(신도코지)교수의 ‘쟁점효이론’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⁵¹⁾

쟁점효이론이란 “전소에서 당사자가 다룬 주요한 쟁점으로서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내린 그 쟁점에 대한 판단에 생기는 통용력으로써 동일한 쟁점을 주요 선결문제로 한 다른 후소의 심리에서 그 판단에 반하는 주장·입증을 불허하고 이와 모순되는 판단을 금지하는 효력이다.”⁵²⁾ 쟁점효의 발생은 이하와 같은 다섯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 “① 전소와 후소의 청구에 관한 주요 쟁점이라는 것, ② 당사자가 전소에서 해당 쟁점에 대해 주장·입증을 완료하였다는 점, ③ 재판소가 해당 쟁점에 대하여 실질적 판단을 내린 점, ④ 전소와 후소의 계쟁이익이 거의 동등하다는 점, ⑤ 당사자가 후소에서 원용하였다는 점”이다.⁵³⁾

하지만 일부청구에 대하여 新堂幸司(신도코지) 교수는 “분쟁해결의 일회성 요청과 당사자의 분할소구에 대하여 가지는 편의와의 비교형량으로부터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극히 정책적인 문제”라고 설명하였다.⁵⁴⁾ 그리고 한 번의 소송으로 전부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을 원고의 자의에 의하여 여러 번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에게 이중응소의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법원도 일부청구의 판단을 위하여 그 권리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다시 심리하는 것은 분쟁해결의 효율을 저하하는 것으로 잔부청구소송은

- 51) 高田裕成, 上掲論文, 179頁(“これに対して学説においては, 既判力の対象を限定した114条立法者の政策的判断を尊重しつつも, したがって一律に拘束力を肯定するのではなく, 具体的事案の経過を考慮し, 一定の要件を満たした場合にのみ, 既判力以外の枠組みで理由中の判断の後訴への拘束力を肯定する見解が有力に唱えられており, 本件判例が取り上げた争点効という議論もその一つである.”).
- 52) 新堂幸司, 新民事訴訟法 第五版, 弘文堂, 2011, 709頁(“前訴で当事者が主要な争点として争い、かつ、裁判所がこれを審理して下したその争点についての判断に生じる通用力で、同一の争点を主要な先決問題とした異別の後訴請求の審理において、その判断に反する主張立証を許さず、これと矛盾する判断を禁止する効力をいう.”).
- 53) 芳賀雅顯, “既判力の客観的範囲”, 法学教室 459号, 有斐閣, 2018, 29頁(“争点効が発生するための要件は, ①前訴と後訴の請求に関する主要な争点であること, ②当事者が前訴で当該争点につき主張立証を尽くしたこと, ③裁判所が当該争点について実質的判断を下したこと, ④前訴と後訴の係争利益がほぼ同等であること, ⑤当事者が後訴で援用したことである.”).
- 54) 柳内健吾, “一部請求訴訟における残部請求の可否—実体法と訴訟法の調整点を探る”, 学生法政論集 第3号, 2009, 93頁(“一部請求論について「深く紛争解決の一回性の要請と、当事者の分割請求につき有するであろう便宜との比較衡量から個別的に判断されるきわめて政策的な問題である」と述べる.”).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⁵⁾

일본 판례는 쟁점효이론에 대하여 부정하는 태도를 가진다.⁵⁶⁾ 또한, 松本博之(마즈모토 히로유키)교수는 쟁점효이론의 문제점을 “판결이유의 기판력을 부정한 입법자의 결정이 잘못된 재판소의 판단이 영구화되어 당사자가 그 소송에 베풀어 버린 이익을 넘어 광범위한 기판력을 해당 사건으로부터 파생되는 장래의 소송에 미치는 것”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판결이유로 일정한 범위에서의 기판력을 승인한다는 점에서 쟁점효이론을 비판하였다.⁵⁷⁾ 그러나,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서는 新堂幸司(신도코지) 교수의 쟁점효이론이 이중응소, 이중심리의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한다고 생각된다.

나. 독일

독일 민사소송법(ZPO) 제322조 제1항(1877년 민사소송법에서는 제294조 제1항)에서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대하여 “판결은 소 또는 반소에 의해 제기된 청구가 재판되고 있는 한에서만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기판력은 청구 또는 반소청구에 관한 재판소의 판결에 한하여 생기는 것으로 그 범위가 좁아 전소와 후소의 원인이 다를 때 기판력이

55) 柳内健吾, 上掲論文, 93頁(“そして、「一回の訴訟で全部解決できるはずの紛争を原告の恣意によって、数回の訴訟を要することにするのは、一回ですむところをなんども応訴せしめられる被告にとって不公平であるし、裁判所の立場からも、権利の請求された一部についての判断のためには、その権利の成立・存続を全面にわたって審理判決せざるをえないのに、既判力は原告の恣意によって限定された一部にしか及ばないというのでは、費やした労力に比べて紛争解決の実効性に乏しい」として、残額請求を原則として許すべきではないとする。これが上述した全面否定説である。”).

56) 最高裁判所第三小法廷 昭和44年6月24日判決 昭和43年(オ)第1210号.

57) 松本博之, 民事訴訟法の立法史と解釈史と解釈学, 信山社, 2015, 198頁(“しかし, 問題は, 判決理由の既判力を否定した立法者の決定が, 誤った裁判所の判断が永久化され, 当事者がその訴訟に賭けた利益を超えて広範な既判力効を当該事件から派生する将来の訴訟に及ぼし, それによって当事者が予期しない不利益を受けるのを防ぐこと, および, 当事者がしいかなる範囲で既判力に拘束されるかを明確にして予見可能性を確保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ることとの関連である. この立法者の決定は, 当事者が当該争点について十分に争ったか否か, 裁判所がそれについて実質的に判断を下したか否かということと無関係である. 当事者が当該争点をいかに真剣に争っても, 裁判所が事実の認定や法の適用において誤ることは常に起こりうるからである. したがって, 結果として判決理由に一定の範囲で既判力を承認することに帰する争点効理論は, この点で無理があろう.”).

후소에 미치지 않게 된다.⁵⁸⁾ 하지만 쟁점사항에 대한 최종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전 판결에 있어 법적 결과에 대하여 결정적이라고 간주되는 사실을 수정하면 그 이후에 발생한 사실이 허용될 수 있다.⁵⁹⁾

이러한 판결이유 중 판단에 있어 일정한 요건 하에 전소의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견해에서 출발하여 제기된 학설에는 1960년대에 독일의 학자 Zeuner가 제기한 ‘의미관련론’(Sinnzusammenhang)과 Henckel이 제기한 ‘경제적가치동일론’이 있다. 의미관련론이란 전소의 판결이 그 목적에 비추어 후소에서 확정하려는 법률효과와 의미관련이 성립되면 전소이유 중의 판단에 기판력이 미치게 된다는 견해이고,⁶⁰⁾ 경제적가치동일론은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여 전소와 후소의 경제적 가치가 동일할 경우 전소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기판력이 미친다는 견해이다.⁶¹⁾

위 견해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위 견해가 확실히 분쟁의 모순 없는 해결이나 분쟁해결의 일회성에 합치되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한국 민사소송법에서 채택하기엔 법제상 난점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⁶²⁾ 다만, 이러한 독일의 기판력에 관한 위 견해를 한국 민사소송법에 바로 채용하기에는 민사소송법이 온갖 종류의 민사소송이 모두 적용되는 기본법이라는 측면에서 부담이 크지만,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 채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다. 미국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가 소송물을 기초로 정해지는 대륙법계의 한국과 달리⁶³⁾ 미국의 경우, 청구(claim) 또는 소의 원인(case of action)이라는 개념

58) 松本博之, “既判力の対象としての「判決主文に包含するもの」の意義 : 立法史的考察”, 大阪市立大学法学雑誌 第62卷 第1号, 2016, 201頁。

59) Monatschrift für Deutsches Recht, Reichweite der Rechtskraftwirkung eines Urteils, Vol. 75 Issue 7, 446 (2021).

60) 범경철, 앞의 논문, 403면 각주 49(Zeuner, Die objektiven Grenzen der Rechtskraft im Rahmen der rechtlicher Sinnzusammenhänge, 1959 재인용).

61) 범경철, 위의 논문, 403면 각주 50(Henckel, Prozeßrecht und materielles Recht, 1970, S. 173 f. 재인용).

62) 이시윤, 앞의 책, 655면.

63) 정상민, “미국 특허소송에 있어서 판결의 효력 -기판력 및 Kessler 법리에 관한 연방특허항

이 있지만 소송물로 소송절차 전체를 관류하는 요소로 간주하지 않는다.⁶⁴⁾ 미국 민사소송법에서 기판력에 관한 개념은 청구배제효(claim preclusion)와 쟁점배제효(issue preclusion)를 모두 포괄한 광의의 기판력⁶⁵⁾과 청구배제효(claim preclusion)만을 가르키는 좁은 의미의 기판력이 있다.⁶⁶⁾⁶⁷⁾ 이러한 점에서 한국 민사소송법의 기판력은 미국 민사소송법에서의 이론과 큰 차이가 없지만, 확정판결의 효력에서 한국은 기판력과 집행력·형성력, 법률요건적 효력 등으로 세분화하여 개념화하는 것에 비해, 미국은 판결의 효력을 좁은 의미의 부수적 금반언으로 규율한다.⁶⁸⁾

미국의 쟁점배제효는 법원에 의하여 만들어진 공평원칙으로, 당사자가

소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제15권 제4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0, 105면.

64) 정상민, “미국 특허소송에 있어서 판결의 효력 —기판력 및 Kessler 법리에 관한 연방특허항소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제15권 제4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0, 105면, 각주 4 참고“영미법계도 과거 보통법에서는 하나의 청구원인(cause of action)에 기한 청구만 인정하고 정형화된 소장(writ)에 기한 청구만을 인정하는 등 법적 형식주의에 기초한 규칙주의 경향이었으나, 오늘날에는 형평법의 보완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융통성 있게 판결의 효력 내지 배제효를 적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태영·정용균, “미국 민사소송법상 판결의 차단효”, 『강원법학』, 제46권(2015), 562면.”

65) James P. Bradley & Kelly J. Kubasta, *Issue Preclusion as Applied to Claim Interpretation*, 10 Tex. Intell. Prop. L.J. 323 324 (2002) (“In its broadest sense, the concept of res judicata encompasses two distinct doctrines of preclusion: 1) claim preclusion (the traditional form of res judicata); and 2) issue preclusion (traditionally referred to as collateral estoppel). The close relationship of these two doctrines often leads to confusion by litigants and the courts. Before addressing the scope of issue preclusion as it applies to claim interpretation, it is therefore important to clearly distinguish these two separate doctrines.”).

66) 이태영·정용균, “미국 민사소송법상 판결의 차단효”, 강원법학 제46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 562-563면; 정영환, “미국민사소송법상의 판결의 효력(1): 좁은 의미의 Res Judicata를 중심으로 -”, 안암법학 제33권, 안암법학회, 2010, 285면.

67) 미국 판결의 효력에는 크게 동일한 청구의 반복을 금지하는 기판력과 쟁점의 재론을 배제하는 부수적 금반언이 포함되어 있고, 현재는 기판력을 “청구배제효” 그리고 부수적 금반언을 ‘쟁점배제효’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상민, 앞의 논문, 116면 참고.

68) 정영환, 앞의 논문, 291면(“우리나라의 기판력 개념은 좁은 의미의 Res Judicata와 매우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확정판결의 효력을 기판력과 집행력·형성력, 법률요건적 효력 등으로 세분화하여 개념화하고 있으나, 미국법상 판결의 효력은 좁은 의미의 Res Judicata와 부수적 금반언(Collateral Estoppel)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판력 개념과 미국법상의 좁은 의미의 Res Judicata와 부수적 금반언(Collateral Estoppel)과는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때 법원은 전 소송에서 결정된 쟁점의 새로운 심리를 배제하기 위한 도구로써 중복적인 소송을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⁶⁹⁾ *Blonder-Tongue v. University of Illinois* 사건을 통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처음으로 쟁점배제효를 특허법 영역에 응용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 판결된 특허에 관한 재심리를 인정하지 않았다.⁷⁰⁾ 그리고 특허법상 쟁점배제효의 적용에 대하여 연방관할항소법원(CAFC)은 *Blonder-Tongue* 판결보다 더 정확한 적용요건을 제시하였다.⁷¹⁾ 즉, 쟁점배제효는 오직 전소의 당사자에게만 주장될 수 있는 동시에 “① 해당 문제가 전소 중에서 결정된 문제와 동일하다는 점, ② 해당 문제가 전소 중에서 실제로 다투어졌다는 점, ③ 배제가 요구되는 당사자는 전소에서 해당 문제에 대하여 소송할 수 있는 충분하고 공평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 ④ 해당 문제의 확인이 전소의 최종판결에 매우 중요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⁷²⁾ 하지만 위 요건을 만족한다고 하여 법원이 필연적으로 쟁점배제효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 공평을 고려하여 법원이 쟁점배제효의 적용에 일정한 재량권이 주어진다.⁷³⁾

69) James P. Muraff, *Issue Preclusion - Recongnizing Foreign Judgments in United States Patent Infringement Suits: A New Approach, The Harmonization of International Patent Law: Note* 26 J. Marshall L. Rev. 627, 627 (1993) (“Issue preclusion is a powerful tool which judges use to end repetitive litigation when a court has decided the same issue in a former suit.”).

70) Stephen C. DeSalvo, *Invalidating Issue Preclusion: Rethinking Preclusion in the Patent Context*, 165 U. Pa. L. Rev. 707, 714 (2017) (“The Supreme Court reversed course in 1971 in *Blonder-Tongue Laboratories, Inc. v. University of Illinois Foundation*. The Court overruled *Triplett* and held that issue preclusion applies to prevent litigation on a patent that has previously been declared invalid in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71) James P. Bradley & Kelly J. Kubasta, *supra*, at 327 (“Since *Blonder-Tongue*, the Federal Circuit has more fully explained the requirements for application of issue preclusion during patent litigation.”).

72) Matthew A. Ferry, *Different Infringement, Different Issue: Altering Issue Preclusion as Applied to Claim Construction*, 19 Tex. Intell. Prop. L.J. 361, 366 (2011) (“(1) the issue is identical to the issue decided in the prior litigation; (2) the issue was actually litigated in the prior litigation; (3) the party against whom preclusion is sought had a full and fair opportunity to litigate the issue in the prior litigation; and (4) the determination of the issue was essential to a final judgment of the prior litigation.”).

이러한 쟁점배제효는 특허사건에서만이 아니라 민사, 형사사건에서도 적용되는데 그것은 쟁점배제효가 법원으로 하여금 사법자원을 절약하게 하고,⁷⁴⁾ 당사자들을 반복적인 소송에서 보호하여 분쟁의 명확한 해결을 촉진하며,⁷⁵⁾ 두 법원이 동일한 쟁점에 대해 서로 다르게 판단하는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⁷⁶⁾ 하지만 연방관할항소법원과 대다수 지역법원에서 쟁점배제효에 대한 적용은 적합하지 않거나 맹목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었다.⁷⁷⁾ 쟁점배제효가 적용되는 특허무효의 문제

73) James P. Bradley & Kelly J. Kubasta, *supra*, at 327 (“Satisfaction of the above requirements, however, does not necessarily guarantee that issue preclusion will be applied by the courts. One exception is addressed in the Restatement (Second) of Judgments—‘Although an issue is actually litigated and determined by a valid and final judgment, and the determination is essential to the judgment, relitigation of the issue in a subsequent action between the parties is not precluded [when].. [t]he party against whom preclusion is sought could not, as a matter of law, have obtained review of the judgment in the initial action.’ Moreover, equitable considerations are also appropriate considerations, thereby allowing the court some discretion in determining whether a party can successfully assert issue preclusion.”).

74) Wood C. Eric, *Civil Procedure - Res Judicata - Virtual Representation Cannot Bind a Nonparty to a Judgment in a Prior Case Where No Legal Relationship Existed between the Two Parties*. *Taylor v. Sturgell*, 128 S. Ct. 2161 (2008), Casenote 39 *Cumb. L. Rev.* 801, 816 (2008).

75) Eli J. Richardson, *Taking Issue with Issue Preclusion: Reinventing Collateral Estoppel*, 65 *Miss. L.J.* 41, 45-46 (1995) (“Specifically, collateral estoppel is intended to accomplish the following: conserve judicial resources, preserve ‘the integrity of the court’ by preventing inconsistent resolution of issues, promote ‘finality of judgments,’ protect defendants from repetitive litigation, ensure that a winning ‘party should not have to fight anew a battle it has already won,’ and promote ‘conclusive resolution of disputes’ Although articulated differently, these objectives often overlap one another and have much in common.”).

76) Stephen C. Desalvo, *Invalidating Issue Preclusion: Rethinking Preclusion in the Patent Context*, 165 *U. Pa. L. Rev.* 707, 712 (2017) (“Regardless of the test set out by each regional circuit, it is clear that all of the federal courts require that the issue being precluded in the present action be identical to the issue actually litigated and determined in an earlier proceeding. Only if the issue decided in a previous case was the same as the single issue to be determined in the current litigation will issue preclusion apply in federal court.”).

77) Stephen C. Desalvo, *supra*, at 715 (“Despite the fact that the arguments supporting application of issue preclusion seem limited to situations in which the defendant is asserting the same invalidity contentions that were actually litigated in the previous proceeding, courts have generally applied the *Blonder-Tongue* rule blindly.”).

에 대하여 Stephen C. DeSalvo는 특허사건에서 배제효를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새로운 적용방법은 실질적인 법적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쟁점배제효를 적용하여야 할 것. 둘째, 특허법에서의 배제효의 적용은 민법의 다른 분야에서의 적용과 일치하여야 할 것. 셋째, 특허가 무효인 경우 긍정적인 정책결과와 소송인의 격려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과 같은 목표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⁷⁸⁾ 그리고 쟁점배제효가 합당하지 않은 절차적 도구일 때 법원은 쟁점배제효를 전체 특허의 무효 문제에 적용해서는 안되고, 응당 특허무효의 배경 하에서 법원은 전형적인 사건 이외에 쟁점배제효의 적용을 배제하여 더욱더 발전된 절차적 도구를 찾음으로써 법률과 실용적 일치성을 촉진하여 소송인의 공평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⁷⁹⁾

V.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 적합한 기판력 법리의 제안

1. 해석론적 해결방안

앞에서 소개된 한국의 세 가지 소송물이론에서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 가장 적합한 것은 신소송물이론에서의 이분지설이다. 구소송물이론은 사건의 종류가 다양한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적합할 수 있지만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에 대하여 구소송물이론을 적용하면 기판력 범위가 좁아진다. 즉, 이 사건 3차소송 판결과 같이 1차소송에서 판결된 부분을 다시 산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잔부청구의 산정방법까지도 1차소송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구소송물이론은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하는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신실체법설은 하나의 통일

78) Stephen C. Desalvo, *supra*, at 719.

79) Stephen C. Desalvo, *supra*, at 728 (“B. The Search for a Better Procedural Tool in the Patent Invalidation Context. Courts should move away from applying issue preclusion outside of the paradigmatic case, and should instead use a new approach that fosters legal and pragmatic consistency, positive litigant incentives, and fairness.”).

적인 소송물만이 존재한다고 보면 궁극적으로 직무발명보상금청구 확정 판결의 기판력 범위에 있어 구실체법설과 같다는 점에서 구실체법설과 동일한 문제점을 가진다. 두 소송물이론에 비해 신소송물이론의 이분지설을 적용할 경우 기판력의 범위를 ‘판결이유’에까지 확장시켜 잔부청구에서의 중복심리를 막을 수 있다. 이분지설은 구소송물이론에 대한 반성의 결과이며 분쟁해결의 일회적 해결을 확보하기 위한 이론으로서⁸⁰⁾ 사건의 사실관계가 중요한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의 성격에 적합하다. 향후 법원이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의 경우에 한하여 그 이분지설을 적극 적용하기를 기대한다.

2. 입법론적 해결방안

본 논문에서 본 저자는 발명진흥법에 신소송물이론의 이분지설 또는 미국의 쟁점배제효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기판력의 범위를 확장하는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일본의 쟁점효이론도 기판력 범위의 확장의 필요성에서 논의가 되어왔다. 하지만 쟁점효이론은 “진소에서 당사자가 다투는 주요한 쟁점으로서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내린 그 쟁점에 대한 판단에 생기는 통용력”이라는 점과 후소의 잔부청구에 관하여서는 쟁점배제효의 “임의로 어떠한 소송을 제한하는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은 어디까지나 구체적인 판결에 적용된 적이 없는 미래지향적인 구상이다. 일본의 쟁점효이론의 적용에 관하여 昭和48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해당 이론을 정면으로 반대한 바 있고,⁸¹⁾ 그 후 그 판결을 뒤집은 다른 판결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일본의 쟁점효이론과 미국의 쟁점배제효는 구성요건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의 쟁점효이론은 판

80) 손한기, 앞의 논문, 191-192면(“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는 근시 소송물이론의 과정을 통해 이 문제가 부각되었다. 왜냐하면 과거 구소송물이론을 취하는 입장과 달리 신소송물이론의 입장에서는 분쟁해결의 일회성이라는 정책적 배려가 전면에 등장하게 되고 무비판적으로 소송물의 분단을 허용하던 사고에 반성의 계기를 부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신소송물이론이 소송물의 질적분단을 억제하여 분쟁해결의 일회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론이라면 ……”.).

81) 最高裁判所第一法廷 昭和48年10月4日判決 昭和47年(オ)第1293号, 最高裁判所第二小法廷 昭和56年7月3日判決 昭和53年(オ)第1061号.

결이유의 기판력을 긍정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이끈다는 점에서 미국의 쟁점배제효와 다른 점이 있다.⁸²⁾

이에 반해 미국의 쟁점배제효는 판례에서의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 중복심리의 문제점이 있지만 판례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 대한 적용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 또한, 쟁점배제효이론은 법원에서 일관성 없는 판결을 생산할 위험성을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잔부청구가 여러차례 제기될 수 있는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의 성격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본 저자는 중업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원고의 잔부청구에 대해서도 일부청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일정한 정도 미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공식에 쟁점배제효이론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발명자 공헌도, 발명자의 기여율, 그리고 특허비등록국가 매출액의 포함 여부라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인정되고, 그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주장,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된다. 발명자 공헌도 및 발명자의 기여율은 발명의 창출 당시 이미 결정된 사안이므로 후소에서 달리 판단될 여지도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필수 선결쟁점이기 때문이다.

VI. 결론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 있어 원고는 보상금 청구액 중 일부만 청구하는 일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체법상 채권을 분할하여 행사하는 것은 채권자의 자유이고 소송법상으로도 ‘처분권주의’ 하에서 원고는 소송의 개시, 범위, 종결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원고가 우선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하는 적법성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문제는 원고가 전소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나머지 액수를 청구하는 새로운

82) 松本博之, 前掲論文, 160頁, 脚註83 松本博之 / 上野泰男『民事訴訟法 [第8版]』(2015年·弘文堂) [684] [松本] 참고“この立法的決定は尊重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が、既判力が及ばないところで、争点効等が判決理由の既判力を肯定するのと類似の結果を導くことは、アメリカ法の争点排除効とは異なり、現行法の枠組みでは背理であろう。”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에 있다. 즉,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주문=객관적 범위=소송물”로 본다.⁸³⁾ 여기서의 소송물을 좁게 보느냐, 심리된 쟁점까지 넓게 보느냐에 따라 기판력의 범위가 달라진다.

상기 일부청구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일부청구 긍정설, 일부청구 부정설 그리고 학설의 다수설이자 판례의 통설인 절충설에 대하여 분석하고, 민법에서의 소송물이론을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 적용함과 동시에, 일본, 미국, 독일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이론을 정리하여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 가장 적합한 소송물이론이 무엇인지를 탐구하였다. 결론적으로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 적용되어야 하는 소송물이론으로는 ‘이분지설’이 가장 적합하고, 입법론적으로 미국의 쟁점배제효 법리를 현 발명진흥법과 결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분지설에 의하면 일부청구와 잔부청구의 관계에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는 ‘신청과 판결이유’에 미친다. 직무발명보상금청구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매출액 등 정보를 미처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고가 일부청구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1차소송에서 이미 산정된 요소들에 대하여 다시 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1차소송에서 직무발명보상금산정 공식 중에서 불가변의 요소들에 대해서는 잔부청구 시에도 심리되지 않아야 하고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

83) 홍기문, 앞의 논문, 23면(“여기에서 ‘주문에 포함된 것’의 의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주문은 당사자의 관심사이므로 주문=소송물=객관적 범위로 파악하고 있다.”); 김일룡, 앞의 논문, 342면(“통설은 ‘소송물=기판력의 범위’라는 등식을 인정하며,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 범위는 어떤 소송물이론을 취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김건호, 앞의 논문, 136-137면(“그런데 판결주문은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응하는 것으로써 본안판결의 경우 원고의 소송상 청구의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기판력이 소송물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한하여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된다.”); 석현수, “기판력 작용의 요건”, 한양법학 제26권 제3집 통권 제51집, 한양법학회, 2015, 129면(“원칙적으로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서(주관적 범위)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한해(객관적 범위) 미치고, 그 표준시는 사실심변론종결시이다(시적 범위).”); 한충수, 앞의 논문, 1면(“기판력의 범위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는 소송물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금청구소송의 경우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서 심리, 판단된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판결이유들에까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게 할 필요가 있다. 다음 표는 앞에서의 논의를 종합한 본 저자의 발명진흥법 개정안이다.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 적합한 합리적인 기판력 법리의 제안>

<p>현행 발명진흥법</p>	<p>개정방안 제19조의2(기판력의 객관적 범위)</p>	<p>참고: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 의 객관적 범위)</p>
<p>(신설)</p>	<p>①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해당 소송물 및 그 소송물의 판단을 위해 실질적으로 심리, 판단된 판결이유에 미친다. ②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법원은 예외적인 상황, 공평을 고려하여 해당 판결이유에 기판력을 적용하지 않을 재량을 가진다.</p>	<p>① 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既判力)을 가진다.</p>

(논문투고일: 2023.12.4., 심사개시일: 2023.12.6., 게재확정일: 2023.12.27.)



▶ 김유진 · 정차호

직무발명보상금, 확정판결, 기판력, 잔부청구, 쟁점배제효

【참 고 문 헌】

I. 한국 단행본

- 김인호, 민사소송법: 사례와 판례, 통계와 분석, 박영사, 2009.
김용진, (다시본) 민사소송법, 청목, 2012.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12판, 박영사, 2018.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세창, 2009.

II. 한국 논문

- 김건호, “기관력의 물적범위에 관한 소고: 소송물이론을 중심으로”, 법조 제56권 제9호, 법조협회, 2007.
김동현, “소송물의 동일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사실관계 획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김상용, “기관력의 작용과 범위의 관계”, 법학연구 제57권 제3호(통권 제89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김일룡, “판결주문의 형식과 기관력의 객관적 범위의 관계”, 동아법학 제53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박태신, “일부청구 및 그 관련문제에 관한 고찰”, 법조 제53권 제1호, 법조, 2003.
범경철, “기관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판결주문과 이유의 판단에 관련하여 -”,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 홍익법학연구소, 2012.
손한기, “일부청구 허부에 관한 소고”, 김홍규박사 화갑기념논문집, 삼영사, 1992.
석현수, “기관력 작용의 요건”, 한양법학 제26권 제3집 통권 제51집, 한양법학회, 2015.
원종배, “일부청구의 소송물 특성과 시효중단 문제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과 관련하여 -”, 영남법학 제53권,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윤석준·김상수, “[民事訴訟法 case] 일부청구 후 잔부청구와 중복소제기, 기관력”, 고시연구 2006년 9월호(통권 제390호), 고시연구, 2006.
이현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의 소송물과 기관력과 의 관계”, 법학논총, 제35권 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이태영·정용균, “미국 민사소송법상 판결의 차단효”, 강원법학 제46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

- 정상민, “미국 특허소송에 있어서 판결의 효력 - 기판력 및 Kessler 법리에 관한 연방특허항소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제15권 제4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0.
- 정세진, “일부청구에 관한 고찰”, 영산법률논총 제7권 제2호,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10.
- 정소민, “명시적 일부청구와 소멸시효의 중단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에 대한 평석 -”, 법학논총 제37권 제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 정영환, “미국민사소송법상의 판결의 효력(1): 좁은 의미의 Res Judicata를 중심으로 -”, 안암법학 제33권, 안암법학회, 2010.
- 정차호·김유진,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 있어 특허비등록국가에서의 매출액의 포함 여부”, 법학연구 제33권 제4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 태기정, “일부청구의 소송물과 시효중단범위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 72521 판결”, 법학연구 통권 제55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 한충수, “사법: 소송물의 실질적 동일성과 기판력의 작용이론 - 판례분석과 시론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25권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홍기문, “기판력의 범위”, 법학논총 제35권 제3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III. 일본 문헌

- 高田裕成, “争点効”, 民事訴訟法判例百選 第五版, 有斐閣, 2015.
- 芳賀雅顯, “既判力の客観的範圍”, 法学教室 459号, 有斐閣, 2018.
- 柳内健吾, “一部請求訴訟における残部請求の可否—実体法と訴訟法の調整点を探る”, 学生法政論集 第3号, 2009.
- 松本博之, “既判力の対象としての「判決主文に包含するもの」の意義: 立法史的考察”, 大阪市立大学法学雑誌 第62卷 第1号, 2016.

IV. 독일 문헌

-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 Reichweite der Rechtskraftwirkung eines Urteils, Vol. 75 Issue 7, 446 (2021).

V. 미국 문헌

- Ajay Pal Singh, A Legitimate Exclusion in Rejection of a Plaintiff, *Supremo*

Amicus, Vol. 26, 13 (2021).

Eli J. Richardson, Taking Issue with Issue Preclusion: Reinventing Collateral Estoppel, 65 Miss. L.J. 41 (1995).

James P. Bradley & Kelly J. Kubasta, Issue Preclusion as Applied to Claim Interpretation, 10 Tex. Intell. Prop. L.J. 323 (2002).

James P. Muraff, Issue Preclusion - Recongnizing Foreign Judgments in United States Patent Infringement Suits: A New Approach, The Harmonization of International Patent Law: Note, 26 J. Marshall L. Rev. 627 (1993).

Matthew A. Ferry, Different Infringement, Different Issue: Altering Issue Preclusion as Applied to Claim Construction, 19 Tex. Intell. Prop. L.J. 361 (2011).

Stephen C. DeSalvo, Invalidating Issue Preclusion: Rethinking Preclusion in the Patent Context, 165 U. Pa. L. Rev. 707 (2017).

Wood C. Eric, Civil Procedure - Res Judicata - Virtual Representation Cannot Bind a Nonparty to a Judgment in a Prior Case Where No Legal Relationship Existed between the Two Parties. Taylor v. Sturgell, 128 S. Ct. 2161 (2008), Casenote, 39 Cumb. L. Rev. 801 (2008).

VI. 신문기사

차효진, “기술혁신에 도입했는데 ... 늘어나는 직무발명보상제 소송”, 매거진한경, 2022. 03. 04.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202234587b>>.

VII. 인터넷 자료

특허청, “2021년 지식재산 백서 제7편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및 심사·심판 통계현황, 제1장 「국내출원 분야 현황」, 특허청, 2022, 418면.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294&prchId=CNT0000171&pgmSeq=8&ntatcSeq=8>>.

Abstract

Scope of Res Judicata of a Final Judgment in an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Claim Lawsuit: Focusing on the Samsung SDI Case

Youchen JIN (Ph.D Candidate, Sungkyunkwan Univ. Law School)

Chaho JUNG (Professor, Sungkyunkwan Univ. Law School)

According to Article 216(1) of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the scope of res judicata of a final judgment shall be only applied the “order” of the judgment. The same law of res judicata shall also be applied to the lawsuit for the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In the first lawsuit of the Samsung SDI case (Suwon District Court 2009GaHab2746 case), the plaintiff requested a part of total expected remuneration. After determining specific figures such as sales revenue, royalty rate, contribution rate of inventions and utility model and the plaintiff's contribution rate, the court decided full amount of remuneration, and the judgment has become final. Afterwards, the plaintiff filed a so-called residual claim lawsuit against the remaining amount. In the second lawsuit, the first instance court dismissed the lawsuit on the grounds of violating the rule of good faith (Suwon District Court 2015GaHab68143 case), but the appellate court recognized the residual request and remanded the case to the lower court for calculating remuneration (Patent Court 2017Na1438 case). Our authors think this is a judgment based on the res judicata principle stipulated in Article 216(1) of the Civil Procedure Act. In the third lawsuit, the court completely reexamined the sales revenue, royalty rate, contribution rate of invention and utility model, plaintiff's

contribution rate, etc. which were already determined by the final judgment of the first lawsuit, and decided new figures (Patent Court 2020Na1155 case). This article specifies the issue of retrial and re-judgment in the third lawsuit for the figures determined by the final judgment in the first lawsuit of Samsung SDI case. This type of repeated trial will bring additional burden to the parties and the court, and harms the coherence of court judgments. The current doctrine of *res judicata* cannot produce a reasonable result in a lawsuit for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To address this issue, this article analyzes the lawsuit subject matter theories of South Korea, Japa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As a result, it is reasonable to expand the scope of *res judicata* in the lawsuits of employees invention to hearing and judgment, rather than narrowly viewing it as an “order of a judgement (o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 subject matter).” That is to say, firstly,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pretive theory, treating the scope of *res judicata* as the “two part theory” in Korean litigation physics, where the object of action is the “relationship between application and fact”, is most suitable for claims for compensation for employee’s invention. Therefore, in the future, courts are recommended to apply the two part theory. Secondly, from a legislative perspective, this paper advocates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issue preclusion theory of the United States into the Korea Invention Promotion Act. As a solution to implement its proposition, the Invention Promotion Act should establish the regulation of “the *res judicata* of the final judgment in the lawsuit for compensation claims for employee’s invention involves the main disputed points of trial and judgment in order to determine the litigation object and its litigation object.”



Youchen JIN · Chaho JUNG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Final Judgment, *Res Judicata*,
Residual Request, Issue Preclusion